

#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한 특정중요물자 선정 현황 및 시사점

## 요약

2022년 5월 제정된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일본의 경제안전보장과 관련해 크게 네 가지 경제정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① 특정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 ② 특정사회기반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확보, ③ 특정중요기술의 개발 지원, ④ 특허 출원 비공개 등이 그것이다. 이 중 핵심 품목의 지정과 관련해 일본은 지난 2022년 12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시행령을 발표, 반도체, 배터리, 비료, 광물 등 11개 중요물자를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하였다. 특정중요물자는 중요성, 외부 의존성, 공급 단절의 개연성, 그리고 조치의 필요성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물자들로, 일본 정부는 지정된 특정중요물자별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방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서 특정중요물자의 지정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리고 대응 방침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현재 경제안보 관련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안들을 입법 중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 1. 들어가며

2022년 5월 제정된 일본의 ‘경제시책을 일체로 강구하는 안전보장 확보의 추진에 관한 법률’<sup>1)</sup>(이하 경제안전보장추진법)<sup>1)</sup>이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일본 정부가 안전보장추진을 위해 크게 네 가지 경제시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① 특정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 ② 특정사회기반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확보 ③ 특정중요기술의 개발 지원 ④ 특허출원 비공개이다. 이 중 첫 번째 시책과 관련해 2022년 12월 20일 일본 내각 각의에서 결정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시행령(정령 제394호)에서는 11개 물자를 특정중요물자로 지정,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위한 정책들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정중요물자와 관련한 일본의 일련의 움직임은 우리의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 정책들과 관련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보건 및 지정학적 위기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국민경제와 산업에 필수 불가결한 핵심 물자와 기술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

가 아니어서 우리 정부는 현재 기획재정부 주도로 200대 경제 안보 핵심 품목을,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338대 소재·부품·장비 핵심 품목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국가자원 안보에 관한 특별법안’ 등 핵심 자원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경제 안보 관련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안이 제정되면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핵심 품목의 지정 및 관리,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과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 일본의 특정중요물자 지정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 정책의 근거가 될 법률 수립에 유용한 참고가 된다.

이 글은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시행에서 특정중요물자와 관련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특정중요물자의 지정에 어떠한 과정과 기준을 따르는지, 특정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어떤 대응 시책들이 준비되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어떤 물자들이 특정중요물자로 선정되었는지 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한국의 핵심물자 지정 및 관리, 그리고 현재 입법 절차 중인 관련 법안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1) 経済施策を一體的に講ずることによる安全保障の確保の推進に関する法律.

## 2.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른 특정중요물자 지정

### (1) 특정중요물자 지정 요건 및 절차

본 절에서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근거해 특정중요물자를 지정하는 데 어떤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 지정되는지를 정리한다. 특정중요물자를 지정하기 위한 요건들은 ‘특정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에 관한 기본지침’ 3장에 정의된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요건은 ‘중요성’이다. 중요성은 ① 국민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지와 ② 널리 국민 생활 또는 경제활동에 관여하는지로 나눌 수 있다. 판단은 재화의 중대성, 영향의 범위, 그리고 대체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예컨대 심각한 질병의 치료, 식량의 안정적 확보, 여러 산업의 디지털 전환, 국민 생활 및 경제활동을 지지하는 중요 인프라 기반 등에 필수적이며 대체가 어려운 재화들이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례들이다.

두 번째 요건은 ‘외부 의존성’이다. 외부 의존성은 물자가 ① 현재 외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지, ② 앞으로 외부에 지나치게 의존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판단한다. 이때 현재의 외부 의존성은 재화의 공급이 특정 국가나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공급이 단절될 때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재화들을 말하는데, 특정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집중의 정도, 국내외로부터의 대체 공급 확보의 가능성, 그리고 단기적 공급 단절 등에 대한 취약성 정도를 고려해 판단한다. 미래의 외부 의존 위험 우려가 있는 재화들은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나 기술혁신 동향 등을 볼 때 조치를 도입하지 않으면 장래의 외부 의존 위험성이 높아질 개연성이 있는 재화들이다. 이러한 재화들은 장래 중요성, 성장 가능성 그리고 국내외 동향들을 고려해

〈표 1〉 특정중요물자 지정을 위한 요건들

요건	설명	예시
1. 중요성	- 국민생존에 필수 불가결 - 널리 국민 생활 및 경제활동에 관여	- 심각한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고 대체 불가 -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에 필수적이고 대체 불가 - 국민경제를 지지하는 인프라의 기반이 되는 부재료이고 대체가 어려움
2. 외부 의존성	- 현재 외부에 지나치게 의존 - 향후 외부에 과도하게 의존할 우려	- 특정 소수 국가에 공급이 집중된 재화 - 해당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이 소수로 한정 - 현재의 외부 의존도는 낮으나 여러 국가들에서 전략 물자로 대규모 지원 및 기술 추격 - 현재의 외부 의존도는 낮으나 향후 공급망 구조에서의 근본적인 전환으로 인해 외부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
3. 공급 단절의 개연성	- 외부적 이유로 인해 공급 단절이 발생할 개연성 존재	- 여러 국가에서 전략물자로 선정, 자국에 대한 우선 공급을 취할 방안 모색 - 국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경제적 위압의 수단으로 이용 - 최근에 공급 단절이 발생한 사례 존재
4. 조치의 필요성	-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한 다른 제도가 이미 존재할 경우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할 필요성이 작다고 판단 - 조치를 강구하는 우선도가 높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 필요성이 작은 물자: 석유(석유 비축에 관한 법률), 소금(소금사업법), 향인플루엔자(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쌀(주요 식량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자료: ‘특정중요물자의 안정적 공급의 확보에 관한 기본지침’ 3장 및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관한 전문가 회의(2022. 10. 6 내각관방)’ 자료 중 ‘공급망 강인화 파트 운용을 위한 검토’를 참조해 저자 작성.

판단한다.

세 번째 요건은 외부적인 이유로 ‘공급 단절이 발생할 개연성’이다. 특정중요물자를 선정하는 목적은 외부적인 이유에 의해 중요한 물자의 공급이 단절되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적 이유로 공급 단절 등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존이나 국민생활·경제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정중요물자로 지정, 관리한다.

마지막 요건은 ‘본 제도를 통한 조치의 필요성’이다. 앞서 서술한 세 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이미 별도의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모색하고 있는 재화들(예컨대 석유, 소금, 쌀 등)에 대해서는 본 제도를 통해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할 필요성이 작다고 판단한다. 반대로 조치를 강구할 우선순위가 높아 특히 그 필요성이 크게 인정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특정중요물자는 크게 네 단계를 거쳐 지정된다.<sup>2)</sup> 첫 단계에서는 물자별 소관 부처에서 후보물자를 검토한다. 이때 소관부처는 앞서 설명한 요건들을 바탕으로 공식 통계 및 업계 통계, 업종별 단체 및 사업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각부와 소관 부처의 협력하에 후보 물자가 요건들을 충족시키는지 정밀 조사를 시행한다. 정밀 조사는 통계, 의견 청취와 더불어 경제안전보장추진법 48조 1항에 근거한 공급망 조사를 활용해 공급망 시각화, 위험 요인의

파악 및 분석, 과제 추출 및 대응의 검토 등을 수행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후보 물자들 가운데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할 물자를 선별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한다. 특히 이 단계에서 물자를 둘러싼 환경, 그리고 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에 필요한 정책과 목표를 정리하는 ‘안정공급확보 대응 방침(안)’을 검토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특정중요물자를 확정하고, 지정된 물자에 대한 안정공급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대응 방침을 수립한다. 또한 지정된 물자별로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정공급확보지원법인(또는 안정공급확보지원 독립행정법인)’을 선정, 해당 사업자가 안정공급확보를 위한 대응 계획을 수행하도록 승인 및 지원할 수 있다.<sup>3)</sup>

## (2) 안정공급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대응 방침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지정된 특정중요물자에 대해 해당 물자를 담당하는 부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8조에 따라 ‘안정공급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대응 방침’을 수립한다. 대응 방침에는 해당 물자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위한 대응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한다. 포함되는 항목들은 크게 일곱 가지로 ① 대응의 기본 방향, ② 대응을 위한 소관 부서의 시책, ③ 대응의 내용 및 기간, ④ 물자의 안정공급확보지원법인(또는 안정공급확보지원 행정법인) 관련 내용, ⑤ 특별한 대책

2)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관한 전문가 회의(2022.10.6. 내각관방) 자료 중 ‘공급망 강인화 파트 운용을 위한 검토’ 참조, [https://www.cas.go.jp/jp/seisaku/keizai\\_anzen\\_hosyohousei/4index.html](https://www.cas.go.jp/jp/seisaku/keizai_anzen_hosyohousei/4index.html)

3)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9조.

〈표 2〉 물자별 ‘안정공급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대응 방침’

항목	내용
1. 대응의 기본적인 방향	① 물자를 둘러싼 현상 인식에 대한 내용들 - 관련된 공급망의 구조 및 동향 - 해당 물자 및 관련 산업의 시장 및 투자 동향 및 전망 - 개별 물자와 관련해 공급망이 안고 있는 과제 분석 및 평가 - 국내의 산업 전략 및 과학기술 전략 동향 ② 지정 요건의 해당 여부 - 4가지 요건(중요성, 외부 의존성, 공급 단절 개연성, 조치 필요성)의 해당 여부 ③ 안정공급확보의 목표
2. 대응을 위해 소관 대신의 시책	① 시책의 기본 방향 ② 시책의 내용 - 실시하는 시책의 내용 및 대상, 상정하는 효과 및 목표 ③ 유의 사항 - 시책과 관련된 정부의 전략 및 대응 - 시책을 둘러싼 환경 - 시책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 - 시책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 - 공급망 조사의 기본적인 방향 및 내용
3. 대응 내용에 대한 사항 및 대응 기간	① 대응 대상 범위 - 대상으로 하는 특정중요물자 및 대응 내용 ② 안정공급확보 목표 - 공급능력의 확보, 생산성 및 기술 수준 확보 등에 대해 안정공급확보사업자가 대응해야 하는 구체적 목표 ③ 대응 기간 또는 실시 기한 ④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안정공급확보지원법인(안정공급확보지원 독립행정법인)의 역할	① 안정공급확보지원업무의 기본 방향 ② 안정공급확보지원법인(안정공급확보지원 독립행정법인)의 역할 ③ 안정공급확보지원법인(안정공급확보지원 독립행정법인)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④ 안정공급확보지원업무의 내용 및 실시 체계에 대한 사항 ⑤ 공급확보지원실시기준 작성의 기준이 될 사항 ⑥ 안정공급확보지원법인기금(안정공급확보지원 독립행정법인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5.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특정중요물자로 지정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4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
6. 개별 물자의 안정공급 확보 시 고려 사항	① 국제 협약과의 정합성 ② 경제활동에서의 인권 존중 ③ 관계자 의견의 적절한 고려 및 시행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7. 기타 필요한 사항	위의 1-6 이외에 소관 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료: '특정중요물자의 안정적 공급의 확보에 관한 기본지침(2022. 9. 30 각의 결정)' 4장을 참조해 저자 정리.

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특정중요물자로 지정<sup>4)</sup>하는 것과 관련한 내용, ⑥ 물자의 안정공급확보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 ⑦ 기타 필요한 사항들로 분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2〉에 정리하였다.

4)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제44조 1항.

### 3. 11개 특정중요물자 현황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시행령(정령 제394호) 1조에서는 11개 물자를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하였다. 지정된 11개 품목은 ① 항균성 물질제제, ② 비료, ③ 영구 자석, ④ 공작 기계 및 산업용 로봇, ⑤ 항공기 부품<sup>5)</sup>, ⑥ 반도체 소자 및 집적 회로, ⑦ 배터리, ⑧ 클라우드 프로그램<sup>6)</sup>, ⑨ 가연성 천연가스, ⑩ 금속 광물<sup>7)</sup>, ⑪

선박 부품<sup>8)</sup>이다. 후생노동성이 항균성 물질 제제, 농림수산성이 비료, 국토교통성이 선박 부품, 그리고 경제산업성이 그 밖의 특정중요물자들을 담당, 안정공급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대응 방침을 수립하고 대응 시책들을 시행한다.<sup>9)</sup> 11개 물자별 특정중요물자로 지정된 주요 이유, 그리고 안정공급확보를 위한 대응 방침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표 3>에 정리하였다.<sup>10)</sup>

5) 항공기용 터빈 및 항공기의 기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

6) "인터넷 및 기타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컴퓨터(입출력장치 포함)를 타인의 정보처리용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에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정.

7) 망간, 니켈, 크롬, 텅스텐, 몰리브덴, 코발트, 나이오븀, 탄탈럼, 안티모니, 리튬, 붕소, 티타늄, 바나듐, 스트론튬, 희토류 금속, 백금, 베릴륨, 갈륨, 게르마늄, 셀레늄, 루비듐, 지르코늄, 인듐, 텔루륨, 세슘, 바륨, 하프늄, 레늄, 탈륨, 비스무트, 흑연, 불소, 마그네슘, 실리콘 및 인.

8) 선박용 기관, 항해용 도구 및 추진기로 한정.

9) "일본경제신문(2022), 經濟安全保障「重要物資」半導体など11分野、閣議決定", 12.20.

10) 2022년 12월 현재 비료, 선박 부품은 각각 소관 부처에 의해 대응 방침이 발표되었으며, 나머지 9개 물자들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표 3> 2022년 12월 현재 11개 특정중요물자 현황

특정중요물자	지정 요건	안정 공급 확보 대응 방침 (안)
1. 항균성 물질 제제	- 의료 현장에서 감염증 예방 및 치료에 필수 불가결 - 베타-락탐계 항생제의 경우 원재료의 100%를 해외 의존 - 2019년 수입 단절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수술 연기 등의 문제 발생	- 베타-락탐계 항생제 원재료 및 원역의 제조설비 도입, 비축 체계 정비
2. 비료	- 비료는 농작물 생산에 필수불가결하며 공급 단절 시 식량 안정 공급에 심각한 영향 초래 - 일본은 비료 원료의 공급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 2021년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공급 단절 리스크 대두	- 비료 제조 사업자 등에 의한 비료 원료 비축 - 2023년부터 인산 암모늄, 염화칼륨 등에 대한 보관 시설 정비 및 비축 수준 증가. 2027년까지 연간 수요량의 3개월분 상당 비축을 목표
3. 반도체	- 반도체는 국민 생활 및 산업에 필수 불가결하며 디지털, 녹색 경제 전환을 지지하는 중요한 물자 - 반도체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황린, 희소가스 등에 대한 높은 해외 의존도	- 반도체 제조 기반 정비 - 반도체 제조 장치의 제조 기반 정비 - 반도체 부·소재의 제조 기반 정비 - 반도체 원료의 공급 기반 정비 → 2030년 국내 반도체 생산기업 매출 15조 엔 이상 실현
4. 배터리	- 배터리는 탄소중립의 실현, 그리고 디지털 사회 기반 유지에 필수 불가결	- 배터리 및 부품, 소재 설비 투자

(계속)

특정중요물자	지정 요건	안정 공급 확보 대응 방침 (안)
4. 배터리	- 일본은 배터리 셀/부재료 개발, 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향후 외부 의존이 심화될 우려 존재	- 2차전지 부품 및 소재 설비 투자 → 2030년 국내 제조 기반 150GWh/년 확립 목표
5. 영구자석	- 영구자석은 디지털 사회 전환에 반도체, 배터리와 함께 필수 불가결, 향후 시장 성장 전망 - 일본 기업의 점유율이 하락하며, 향후 외부 의존도가 높아질 전망. 원료인 일부 희토류는 전량 해외 의존	- 영구자석 제조설비의 능력 증강 - 폐자석으로부터의 희토류 원료 재활용 기술개발 및 도입 - 희토류 자석 개발
6. 중요 광물	- 중요 광물은 다양한 경제활동에 사용, 특히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요 증대 - 중요 광물은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	- 2050 탄소중립 실현의 열쇠인 배터리 금속 희토류를 중심으로 지원 - 광산 탐색 및 타당성 평가(FS) 실시 - 광산 개발 - 선광, 제련 사업 보조, 지원 -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선광, 제련 고효율화 및 비용 절감
7. 공작 기계 및 산업용 로봇	- 공작 기계 및 산업용 로봇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사용 - 일본 기업들은 높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추세에 맞춰 수요 확대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경쟁력 유지가 중요.	- 제어 관련 기기의 국내 생산능력 강화(공장 신설, 생산라인 증대) → 2030년까지 공작 기계 연 11만 대, 산업용 로봇 연 35만 대 생산 달성 - 제어 관련 기기의 연구개발
8. 항공기 부품	- 국내외 물류, 이동 수단으로서 항공기의 정상적이고 안전한 운항 보장 - 현재 국제 정세에 비추어 안정적인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외부 의존도가 높아질 우려	- 대형 단조품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한 인증 취득 및 설비 투자 - CMC(세라믹 매트릭스 복합재료) 양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설비 투자 - 탄소섬유 생산능력 증강을 위한 설비투자
9. 클라우드 프로그램	- 국가 차원에서 중요 데이터의 관리를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수적	- 향후 3년간 클라우드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 클라우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이용환경 정비 (예: 슈퍼컴퓨터 도입 비용 보조)
10. 천연가스	- 천연가스는 전체 발전의 40%, 도시가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 공급 단절 시 심각한 영향 -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경쟁에 각국이 참가, 시급한 조치가 필요	- 전략적 잉여 액화천연가스(LNG)확보 사업: 조달 능력이 뛰어난 민간사업자가 전략적으로 잉여 LNG를 확보하도록 지원 필요시 국가와 제휴, 확보한 LNG를 국내의 필요한 지역, 사업자에 공급할 수 있도록 체제 구축 <sup>11)</sup>
11. 선박 부품	- 해상교역 단절 시 국민경제 및 생활에 심각한 타격 - 자율적인 해상 수송 유지를 위해 선박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 필요	- 가스연료 보급에 대응한 선박용 기관(엔진) 및 부품(크랭크샤프트, 항해용구(소나), 추진기(프로펠러) 등의 국내 생산 기반 강화 및 안정적인 생산체제 구축

자료: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관한 전문가 회의(2022.11.16 내각관방)' 자료 중 '특정중요물자의 지정에 대해'를 참조해 저자 정리.

11) 액화 천연가스는 비축에 어려움이 있어 '전략적 잉여 LNG'라는 새로운 구조를 마련, 확보한 LNG를 평소에는 해외시장에 팔고 긴급한 상황

에는 국내 사업자에 판매하도록 유도함. 일본경제신문(2022), "経済安全保障の重要物資 脱中国依存、代替と備蓄両面で", 12.20에서 참조.



## 4. 한국의 경제안보 및 공급망 관련 입법에 대한 시사점

우리 국회에는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상응하는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법안들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이하 공급망 기본법안)’,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자원안보 특별법안)’ 등이 현

재 논의 중이다.<sup>12)</sup> 공급망 기본법안에서는 해외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

12) 그 밖에 기존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도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음.

〈표 4〉 경제안보 및 공급망 관련 법안 현황

	공급망 기본법안	자원안보 특별법안
관리 대상	- 경제안보품목: 해외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및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설비, 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것	- 핵심자원: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자원
계획	-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3년 단위) -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1년 단위)	- 자원안보기본계획(5년 단위) - 자원안보시행계획(필요시)
위원회	-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대통령 소속,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	- 자원안보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조기경보체계 및 공급망 조사	- 조기경보시스템: 공급망 위협의 파악 및 선제적 대응 - 공급망 현황조사 및 공급망 통계 작성	-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자원안보 위기에 대비 및 관련 정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 국가 자원안보 진단 및 평가 - 공급망 점검 및 분석
안정적 공급 방안	-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인정 등 - 수입국가 다변화 지원 - 국내외 생산 기반 지원 - 기술개발 지원 - 경제안보 품목의 비축 및 관리 지원, 품목에 대한 지원 특례 - 경제안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지원 등	- 핵심자원의 개발, 구매, 조달 - 핵심자원의 비축 - 비상동원광산 지정 - 재자원화 지원 - 공급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 핵심공급기관 지정 및 관리 - 핵심수요기관 지정 및 관리
위기 대응	- 위기 대응 매뉴얼 작성 및 운용 - 위기 품목 지정 및 해제 - 수급 안정 조치 - 위기 대책 본부 - 관세 지원 - 매점매석 행위 금지 - 긴급조달 - 위기 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및 손실 지원 등	-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 -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 - 자원안보 위기대응 훈련 실시 - 위기시 개발핵심자원의 반입 명령 - 비축자원의 방출 및 사용 - 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등 -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

자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2022.10.14, 류성걸 의원 대표 발의) 및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2022.8.26, 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검토 보고서(2022.12, 김일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작성) 참조해 저자 작성.



자 및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설비, 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 국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sup>13)</sup> 품목들을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원안보 특별법안 또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자원<sup>14)</sup> 등을 핵심자원으로 정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현재 국회에 발의된 경제안보 및 공급망 관련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4> 참조).

일본의 특정중요물자 선정 현황은 앞으로 우리의 경제안보 및 공급망 관련 법안 입법과 관련해 핵심 품목 지정 및 관리의 실제 적용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생각할 지점은 품목을 지정하기 위한 지정 요건 및 기준에 대한 부분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의 특정중요물자 지정은 중요성, 외부 의존성, 공급 단절의 개연성, 그리고 조치의 필요성이라는 네 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에서는 핵심 품목의 선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정 기준 및 절차와 관련한 내용을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공급망 기본법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도록(자원안보 특별법안) 하고 있다. 따라서 공급망 안정화의 대상이 될 핵심 품목을 선별하는 구체적인 요건 및 기준의 마련이 이후 법률의 시행단계에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특정중요물자 선정 기준은 우리의 경제안보 품목 지정을 위한 판단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 특히 네

가지 기준 중 외부의존성 항목에서 현재의 외부 의존도에 더해 앞으로 외부 의존도가 높아질 위험에 대한 고려는 예상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예방적인 대응 차원에서 중요한 기준이다. 또한 조치의 필요성 항목은 품목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의 중복으로 인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은 핵심 품목(군)별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에 대한 사항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은 특정중요물자별로 소관 부처에 의해 안정공급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대응 방침을 수립하고 있다. 대응방침은 물자별로 대응의 기본 방향과 목표는 물론 물자를 둘러싼 공급망 현황 및 전망, 대응 시책, 대응 대상 범위 및 기간, 안정공급확보지원 업무 내용, 기타 배려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한다.


현재 발의된 공급망 기본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년 단위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관계행정기관은 부처별 소관 분야에 대해 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한다. 자원안보 특별법안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5년 단위로 자원안보기본계획을, 그리고 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한 시행계획을 필요시 수립 및 시행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품목별 공급망 현황 및 안정적 공급을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향후 시행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물자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시행계획이 포함해야 할 사항들을 정하는 단계에서 일본의 특정중요물자별 안정공급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대응 방침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를 참고

13) 공급망 기본법안 2조.

14) 자원안보 특별법안 2조.

할 때 우리의 시행계획에도 물자별 공급망 구조, 동향 및 전망은 물론 물자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단위에서의 목표 및 내용, 적용 범위와 기간, 유의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겠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시행할 민간사업자에 대한 인정 요건, 그리고 사업자가 수립·수행할 안정화 계획의 내용, 지원 방안 및 관리·감독 사항들도 포함하도록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점은 핵심물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일본의 대응 방침에는 특정중요물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응 시 국제 협약과의 정합성, 경제 활동에서의 인권 존중, 관계자 의견의 고려 및 정보 제공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서 환경, 사

회, 지배구조(ESG) 요소와 관련된 요구들이 강화되고 있으며, 일본도 지난 9월 ‘책임 있는 공급망 등에서의 인권 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sup>15)</sup>을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 또한 핵심 품목의 안정적인 확보는 물론 넓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요구가 강화되는 등 ESG와 관련한 국제적인 권고, 요구사항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안보 및 공급망 관련 입법,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sup>16)</sup> 

15) 경제산업성(2022), “責任あるサプライチェーン等における人権尊重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 9.13.

16)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ESG 강화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임소영 외, 「글로벌 공급망의 ESG 강화방안」, 산업연구원(발간 예정) 참조.



최정환

산업통상연구본부 해외산업실 부연구위원  
choijec86@kiet.re.kr / 044-287-3101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역할」(2022)